

담당	책임자	RM	영업점장

수입신용장 재개설 및 증계에 관한 약정서

수입신용장 재개설 의뢰은행(갑)

주 소 :

은행명 :

수입신용장 재개설 은행(을)

주 소 :

은행명 :

상기 당사자간에 수입신용장 재개설 및 증계를 함에 있어 따로 제출한 외국환거래약정서 외에 아래 사항에 상호 합의하고 업무 취급에 협조하기로 한다.

아 래

1. 취급 신용장 내용(개별거래시에만 기재)

가. 개 설 일 자 :

나. 개 설 의뢰인 :

다. 개 설 금 액 :

라. 신용장 번호 :

2. 신용장 재개설에 관한 사항

가. 재개설에 따른 "갑"의 지급보증은 "갑"이 신용장개설 신청서("갑"양식)하단에 이미 "을"에게 제출한 인감신고서상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동 지급보증은 신용장의 결제기일 만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나. "을"은 운송서류 원본이 도착하는 대로 "갑"에게 신속히 이를 송부한다.

다. "을"은 신용장 결제기일을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용장 결제대전의 지급은 개설의뢰인이 "갑"을 경유하여 혹은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을"은 결제 후 이를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개설의뢰인이 "을"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갑"이 통보한 결제일에 "갑"의 계정을 차기하여 결제할 수 있다.



